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-14호

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57-17번지 외 1필지 「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」에 대하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4일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사업의 종류	사업명
소규모재건축	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사업시행구역의 위치	사업시행구역의 면적
재송동 1057-17번지 외 1필지	2,796.6㎡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착수 예정일	준공 예정일
2026. 1. 1.	2028. 12. 31.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조합의 명칭	사무소 소재지
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	해운대구 재송1로31번길 55 (재송동)

5. 변경사항: 정관변경, 조합임원 선임 및 조합원 변경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-	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구역	해운대구 재송동 1057-17번지 외 1필지	2,796.6	-
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㎡)	결정사유
-	해운대구 재송동 1057-17번지 외 1필지	2,796.6	•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코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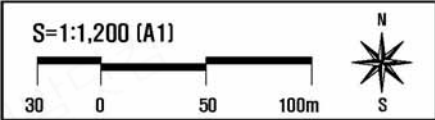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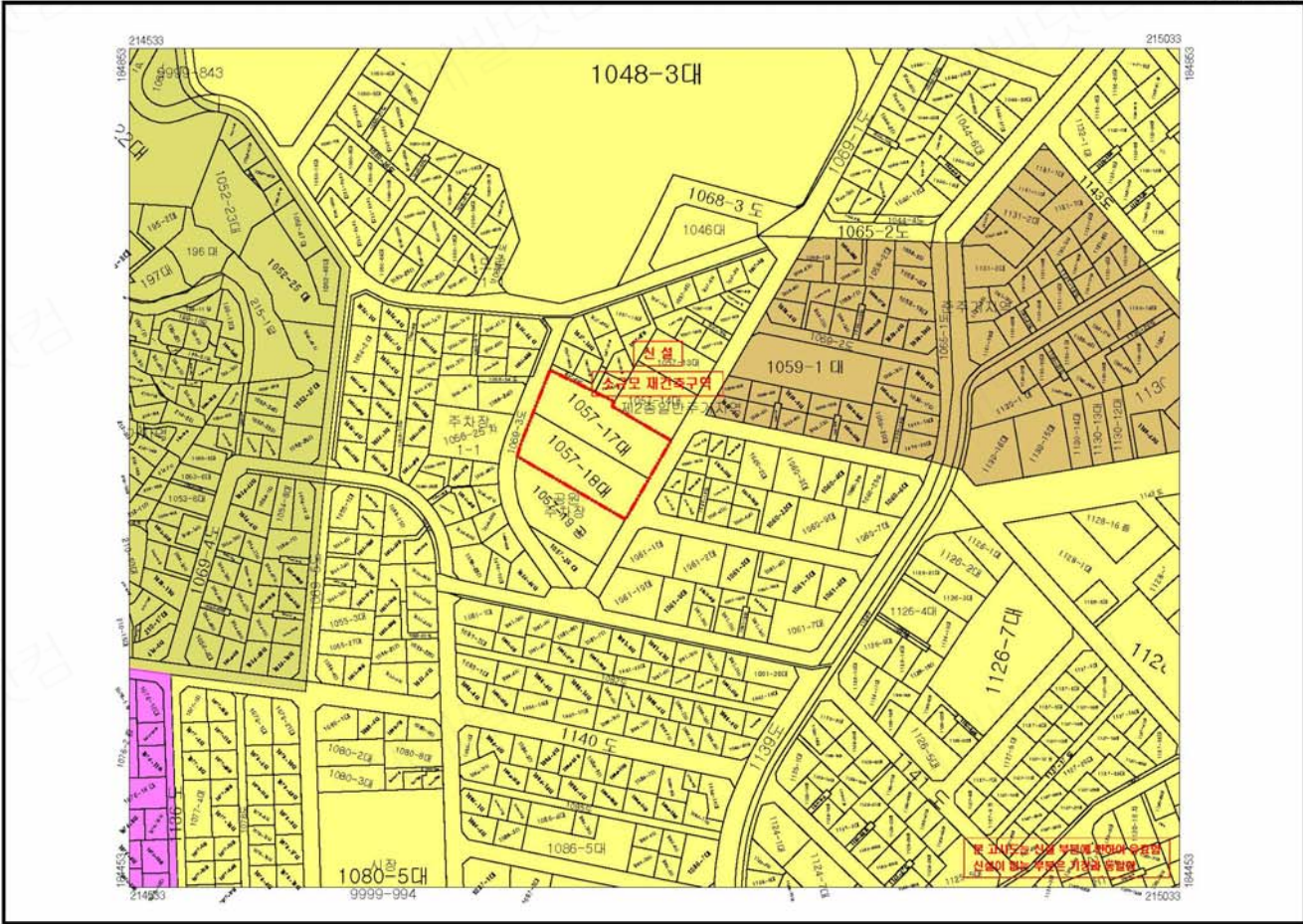
7. 기타 관계도서: 게재생략

○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 건축과 (051-749-4611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

-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-

도업번호: 01



범례

소규모재건축구역(신설)

연속지적선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3종일반주거지역

준주거지역

일반상업지역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
지정일자 : 2026년 02월 04일

고시년도 : 2026년 02월 04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 - 14호
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구분	입안 및 결정권자	
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속	해운대구 건축과	해운대구 건축과
직위	주무관	재개발팀장
직명	지방시설서기	지방시설주사
성명	이정백	정종욱
확인인		

색인도